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66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669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16187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의진

변론종결 2024. 3. 13.

판결선고 2024. 4. 24.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16187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20. 5.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8. 접수 제94331호로 마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8. ‘C은 원고에게 48,469,482원 및 그중 9,829,702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23059,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11. 2. 확정되었다.

나. C은 2020. 5. 30.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0. 6. 8.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22. 12. 14.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3. 4. 25. 제1심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는 2023. 5. 29.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내용과 같은 채권을 갖고 있다.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 부분과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사실 및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1.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2533,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2021. 10. 1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에서 ‘피고는 2021. 10. 30.까지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로서 사실상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동일한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는 당사자 및 취소대상 법률행위를 같이하는 동일 소송물에 관한 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즉,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자회사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 제기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가 제기된 2021. 1. 5. 또는 늦어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2021. 10. 16.에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도과된 후인 2022. 12. 1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③ 나아가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에서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850만 원의 가액배상을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1. 1.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2533)을 제기하여, 2021. 10. 16. 피고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8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원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서로 다른 법인이므로,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동일한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삼은 채권과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삼은
 채권은 서로 다른 채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이나 그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리로서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을 거듭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동일한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한 경우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을 동일한
 것으로 본 판결로서, 원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동일한 채권자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예금보험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또는 원고 소속 직원으로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피고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가 제기되었다거나 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등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취소원인을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 이전에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에서 피고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8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화해권고결정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원인이 인용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승소판결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화해권고결정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판결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③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C을 상대로 받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C은 해당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

2)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2023.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2678)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청구이의 사건의 제1심에서 2023. 6. 16. 원고(C)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2심에서 2023. 11. 24. 원고(C)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과 같은 내용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서야 이 사건 지급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가)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5. 30. 당시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 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6044 사건 관련 채무(을 제4호증 참조)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 2. 6.자 압류 관련 채무(갑 제3호증 갑구 순위번호 5, 46 참조), E 주식회사의 2018. 10. 1.자 가압류 관련 채무(갑 제3호증의 갑구 순위번호 21 참조), 서울 성동구의 2020. 6. 3.자 압류 관련 채무(갑 제3호증 갑구 순위번호 32, 45 참조), F은행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21114 관련 채무(을 제6, 7호증 참조) 등 다수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각종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반하여 C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이 사실상 유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에서 C의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 외에도 충북 괴산군 소재 부동산의 지분과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충북 괴산군 소재 부동산의 지분 가액은 피고의 당시 주장에 의하더라도 26,470,058원에 그치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각종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확인되는 가족관계, 주거관계, 소송대리관계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피고는 C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와 달리 이 사건 소에서는 C의 적극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의 주장처럼 C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그 채무의 발생 및 미변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양도인이 그 채권양도 전에 C을 상대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88409)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아닌 일반 송달의 방법으로 C에게 송달되었던 점,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무 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밖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E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에 대한 채무 등 다수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별지 목록 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서울 성동구의 2020. 6. 3.자 압류 등기가 마쳐진 직후인 2020. 6. 8.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C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중연, 판사 김경년, 판사 이종욱

별 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15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249.18㎡

2층 233.54㎡

3층 330.2㎡

4층 330.2㎡

5층 330.2㎡

6층 330.2㎡

7층 330.2㎡

8층 330.2㎡

9층 330.2㎡

10층 330.2㎡

11층 330.2㎡

12층 330.2㎡

13층 330.2㎡

14층 330.2㎡

15층 330.2㎡ 중

제15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9㎡

공유자 지분 85분의 15 전부, 끝.

